

워싱턴 DC 미국 연방지방법원

성명불상 남녀 D-1, E-1 ~ E-14, F-1, G-1 ~ G-4, H-1 ~ H-3, I-1 ~ I-9, J-1 ~ J-6, K-1 ~ K-8, L-1 ~ L-2, M-1 ~ M-2, N-1 ~ N-3, O-1, P-1 ~ P-4, Q-1 ~ Q-3, R-1, S-1 ~ S-3, T-1 ~ T-5, U-1 ~ U-3, V-1 ~ V-5, W-1 ~ W-4, X-1, Y-1 ~ Y-2, Z-1 ~ Z-4, AA-1 ~ AA-7, BB-1 ~ BB-2, CC-1 ~ CC-6, DD-1, EE-1 ~ EE-2, 그리고 FF-1 ~ FF-9, GG-1 ~ GG-2, HH-1

사건 번호 1:23-cv-00273-TJK

원고들,

v.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중구역, 중성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피고.

소송통지서

1. 피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피고" 또는 "북한")은 외국 주권 면제법 및 미국법(U.S.C.) 제 28 편 제 §1605A 조에 의거하여 워싱턴 D.C. 특별구 미국연방 지방 법원에서 제소되었다. 원고는 1968 년 1 월 23 일에 북한이 공무원, 직원 또는 대리인을 통해 행하여 U.S.S. 푸에블로 선박이 공격 당했을 때 그 선박에 근무한 승무원 또는 그 승무원의 직계 가족이었던 개인 및 고인의 개인적 대리인이다. 그 사건은 성명불상 남녀 D-1~ GG-2 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건번호 1: 23-cv-00273-TJK 이다.

2. 이 소송 통지서에는 4 개의 별첨이 있다.

- 원고가 구제 요청을 기술한 제 2 차 수정 소장 ;

- 법원에서 발행한 소환장으로서 이 소송과, 귀하가 출두하고 변호해야 하는 시점,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의 결과를 알려주는 문서;

- 외국 (기관 및 대행기구 포함)에 대한 미국 법원의 모든 민사 소송을 관장하고,  
그러한 모든 사건의 관할권, 국가 면제 및 전달절차 업무에 대한 독점권을 규정한 법령인  
**1976 년 외국 주권 면제법 (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 of 1976, "FSIA").**

- 중재제안으로서, 원고는 § 1605A (a) (2) (A) (iii)에 의거하여 허용된 국제 중재  
규칙에 따라 청구를 중재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북한에 제공한다.

이 소송 통지서와 그 첨부 파일 4 개의 한국어 번역이 포함되었다. 이 문서들은 28  
U.S.C. § 1608 (a) (3)의 외국 주에 대한 전달절차 요건에 따라 전달된다.

3. 이 법적 절차는 미합중국 정부의 군대, 그들의 직계 친척 또는 그 법률  
대리인이 28 U.S.C.§ 1605A (c)에 의해 제공되는 소송의 사적 권리에 따라 북한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금전적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 소송이다. 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테러 지원국인... 외국 주권자는... 외국이 (a)(1)항에서 설명한  
행동으로 인한 개인적 상해 또는 사망에 대해 다음에 책임을  
진다... (1) 미국 시민, (2) 군인, (3) 미국 정부 피고용인... 또는  
(4) 제 (1) 항, 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기술된 사람의 법정  
대리인... 미국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금전적 손해배상에 대한  
관할권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한 소송에서 손해는 경제적  
손해, 가족의 부재로 인한 손실, 고통 및 괴로움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한 소송에서, 외국은 그 공무원, 직원 또는  
대리인의 행위에 대해 대리 책임이 있다.

4. 원고 측은 북한이 1968년 1월 23일부터 12월 23일까지 U.S.S. 푸에블로 (Pueblo) 납치와 그 승무원의 포로 생활의 결과로 원고에 대해 가해진 고문, 인질 억류, 신체 상해 (해당 연방 관습법 또는 주법에 따른 폭행협박, 구타, 불법 구금, 고의적인 정신적 고통, 그리고 위로금 결여 등)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제 2차 수정 소장은 미국 국무부가 가장 최근에 2017년 11월 30일에 § 1605A (a) (2) (A) (i)에 기술된 바와 같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했다고 주장한다. 제 2차 수정 소장은 또한 북한과 그의 임원, 직원 및 / 또는 대리인이 직무, 고용 또는 기관의 범위 내에서 행동하면서 U.S.S. 푸에블로를 공격하고 승무원을 붙잡아 11개월 동안 인질로 억류했다고 주장하며, 그 기간 동안 인질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문 당하고 육체적인 폭행협박과 죽음으로 위협 받았다고 주장한다. 제 2차 수정 소장은 또한 피고가 고의적으로 원고 승무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했고, 고의적으로 또는 무모하게 원고 가족에게 정서적인 고통과 가족의 부재로 인한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한다.

5. 원고는 피고 및 그 공무원, 피고용인 및 대리인의 행동으로 인한 심한 육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 U.S.S. 푸에블로 승무원의 인질 억류 및 고문을 제한 없이 포함하여 법원이 공정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구제책을 포함하여 재판에서 결정될 금액의 금전적 보상을 요구한다.

6. 제 2차 수정 소장은 1976년 외국 주권 면제법 (이하 "FSIA")의 "테러 예외"에 따라 법원이 북한에 대해 관할권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이 예외는 특히 그 외국이 "테러의 국가 후원자"로 지정된 경우, 고문 행위 또는 인질 납치에서 기인한 인신 상해에 대해 외국에 대한 금전적 손해 배상 청구에 적용된다.

7. 본 소환장 및 제 2 차 수정 소장에 대한 북한의 답변은 귀하가 이 서류를 접수 한 후 60 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답변은 관할구역에 대한 변론 (국가 면제와 관련된 변론 포함)을 제시할 수 있다.

8. 피고가 원고의 중재 제안을 수락하고자 하면, 피고는 이 제안을 수령한 후 60 일 이내에 제 2 차 수정 소장에 대한 답변을 접수하는 대신 중재재판 제안에 대한 수락 통지를 본 법원의 서기에게 접수해야 한다.

9. 법원에 적시에 답변하지 않으면 쉐독판결이 내려지고 판결집행 요청이 내려질 수 있다. 쉐독판결이 내려지면 그 판결을 무효화하거나 재심할 수 있는 절차가 제공될 수 있다.

10. 국가 면책과 외국에 대한 미국 법원의 관할권에 관한 질문은 1976 년의 외국 주권 면제법 (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에 의해 규율 된다.

날짜: 2023 년 9 월 13 일

정중히 제출합니다.

서명: /서명/ 마크 N. 브레이빈  
마크 N. 브레이빈(워싱턴 DC 변호사 번호 249433)  
J. 매튜 윌리엄스 (워싱턴 DC 변호사 번호 501860)  
티아나 A. 베이(워싱턴 DC 변호사 등록 번호 1013476)  
알비나 가산베코바(워싱턴 DC 변호사 등록 번호 1618930)  
미첼 실버버그 앤 크누프 LLP  
1818 N Street NW, 7 층  
워싱턴 DC, 20036  
(202) 355-7900 (전화)  
(202) 355-7886 (팩스)  
mnb@msk.com  
mxw@msk.com  
tab@msk.com  
a1g@msk.com

이상 원고측 변호사